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강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
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
박춘선, 봉양순, 서상열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
이성배, 이종환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거하여,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급식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급식위원회 신설(안 제12조의3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 및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위원회를 둔다.

1.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3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의3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.</u> <u>1.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2.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</u>
<u><신 설></u>	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3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제3항에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으나 끝이어 같은 조·항 제4항에 해당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재정 소요¹⁾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운영되는 위원회가 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(위원회 참석수당, 업무추진비 등)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